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전 기 공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0 ~ 2021. 00. 0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3제1호 중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 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 ----- ----- ----- ----- ----- ----- ----- ----- ----- ----.
1. <u>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u>	1. <u>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u> <u>을</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전력산업과	
연 락 처	044-203-5161